##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43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9.

발 의 자:민형배·김병욱·김성환

박상혁 · 송갑석 · 신정훈

양정숙 • 주철현 • 한병도

홍익표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남녀 구분 설치, 여성화장실 변기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청결기준에 따라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, 비상벨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.

현재 전국 공중화장실 중 17% 정도만 범죄 예방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고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.

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하고, 시장· 군수·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. 몰래카 메라 등의 설치 여부 점검도 포함하고자 합니다. 범죄 및 사고를 방지 하고,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 다(안 제7조, 제12조 및 제16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④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 중 "1회"를 "4회"로 하고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점검하여야한다.

제16조 후단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중화장실등의 비상벨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             | 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    |
| ① ~ ③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|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| ④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・관리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는 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계장치를 말한다)을 설치하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 여야 한다.</u>        |
| <u>④</u> (생 략)                 | 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 |
| <u>⑤</u> 제1항부터 <u>제4항</u> 까지에서 | <u>⑥</u> <u>제5항</u>   |
|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2조(시설 점검) 시장・군수・             | 제12조(시설 점검)           |
|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에 따라 유지・관리되고 있는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<u>1회</u>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 <u><</u>후단 신설>

제16조(보조금의 지급) 국가 및 지 기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・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・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 이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.

|   | <u>4</u> ই।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<u>이 경우 공</u>    |
|   | 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 |
|   |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 |
|   |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 |
|   | 여부에 대하여도 점검하여야   |
|   | 한다.              |
| 제 | 16조(보조금의 지급)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·<br>제4항         |
|   | <u>/ "   1 0</u>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